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4. 04. 0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4. 19.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가. 개정이유

○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을 증액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군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금 상한액을 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주차장법」 제21조의2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성별영향평가: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6921(2024. 2. 15.)]

-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 원안가결 [기획예산담당관-3162(2024. 2. 26.)]

○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295호

가) 예고기간: 2024. 2. 19. ~ 2024. 3. 11.(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증액하고, 현행 조례 내용 중 문구 등을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용어 순화 및 띄워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8조)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현행 200만원 → 300만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세부 보조금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음

[참고] 보조금 지원(관련 근거: 현행 조례 제8조)

○ 대 상 자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대상지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 지원범위: 공사금액의 80% 이내, 한 가구당 최고 3,000천원(기존 2,000천원)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장 설치 보조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군민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다소 제한적인 보조금 지원(연간 3개소 정도)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필요시 향후 대상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4. 19.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